의 안 번 호	1061	【울산광역시중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4. 6. 2.(월)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6. 9.(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4. 6. 16. (월)

2. 제정이유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는 사항(안 제10조)

마.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 및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5.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 위원장은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 당연직 위원은 중구청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중부소방서장이 되고,
  - 위촉직 위원은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 간사는 울산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 실무협의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의 법률적인 근거를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안건번호 10-1054, 2010.7.5)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